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1. 22 선고 2019가단1319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10. 11.

판결 선고 2019. 11. 22.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7가합37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피고가

2004. 10. 2.경 투자원금 반환을 약정하였는바,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7122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8. 2. 14. "피고는 원고에게 13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2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"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,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(2008나31968호), 대법원(2009다1371호)를 거쳐 2009. 4. 15. 확정된 사실,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9. 3. 27.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. 판단

채권자는 채권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,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'재판상의 청구'가 있었다는 확인만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(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

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병태